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디딤 백년50 EMP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 [채권혼합-재간접형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클래스 신설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5. 0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 수익증권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클래스 신설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5. 0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클래스 신설에	제38조(보수)	제38조(보수)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따른 보수 신설	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 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5. O클래스 수익증권</u></p> 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0</u></p> <p>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80</u></p> <p>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 <p>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-	<신설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